제30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집 회 결 과



장 성 군 의 회

심 사 결 과

의 안 명	처리결과					
장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장성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원안 가결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 가결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원안 가결					
장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 가결					
장성군 편백목공예 공방운영 관리 조례안	수정 가결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주 요 내 용

1. 장성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일자 : 2019. 1. 14.

■ 제 안 자 : 김미순 의원

■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에 의거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 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재난예방과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 재난취약계층 정의 (안 제2조)
- 장성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 가운데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 · 65세 이상 노인세대
- 나.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안 제3조)
 - 지원 대상 : 재난취약계층
 - 지원 범위
 - 전기 안전점검 및 정비
 - · 가스·소방시설 등 노후자재 교체
 - · 화재관련 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 등 설치

- 그 밖에 장성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다.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안 제4조~제5조)
 - 지원 신청서를 작성한 지원신청을 원칙으로 함
 -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 결정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9. 1. 30.)

2.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9. 1. 15.

■ 제 출 자 : 장성군수(기획감사담당관)

■ 제안이유

- 現 정부 농업분야 국정과제의 신속 대응 및 민선7기 군정 비전달성 위한 장성 미래농업 선도 및 먹거리정책 추진을 위한 과 신설 및 농 업기술센터 기구조정
- 다양하고 전문적 군민의 요구 충족을 위한 중복·유사·분산된 업무의 재배치 및 분장사무 정비

- 가. 농업기술센터 1과 신설 : 농식품유통과
 - 농산물유통팀의 유통·가공업무 강화 및 現 정부 정책에 부합한 먹 거리 정책 및 로컬푸드 업무 신규추진에 따른 과 신설
- 나. 업무조정에 따른 '과' 명칭변경
 - 중복·유사·분산업무 재정비하여 행정 수요자 중심 및 현재 농업 분야 흐름에 맞는 과 명칭으로 변경
 - 기술보급과 → 원예소득과

- 농촌지원과 → 농촌활력과

다. 분장사무 규정 및 재정비

- 과 분장사무 규정 및 부서별 핵심사무 중심으로 사무분장 재정비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9. 1. 30.)

3.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9. 1. 15.

■ 제 출 자 : 장성군수(기획감사담당관)

■ 제안이유

- 現 정부 농업문야 국정과제의 신속 대응하고 장성 미래농업 선도 및 먹거리정책 추진을 위한 과 신설과 농업기술센터 기구 조정 및 분장 사무 정비에 따른 정원 조정

■ 주요내용

- 장성군 공무원 총 정원 : 618명 → 618명(동일)

- 직급별 정원 조정

(단위: 명)

7 12 _11		일 반 직					-1 -1	112 ml ml	A) = =)	-11
구분 계	계	4급	4~5급	5급	6급아하	정무직	별정식	연구직	기도식	
당초	618	584	3	1	32	548	1	1	3	29
변경	618	592	3	1	34	554	1	1	3	21
증감	-	+8	-	-	+2	+6	-	-	_	△8

※ 지도직(단수)에서 일반직•지도직(복수) 조정에 따라 지도직 정원 감 및 일반직 정원 증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9. 1. 30.)

4. 장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출일자 : 2019. 1. 15.

■ 제 출 자 : 장성군수(총무과장)

■ 제안이유

- 장성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 및 분권을 실현하여 군민 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책무(안 제1조~제3조)
- ·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
-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계획 수립 및 정책과제 추진(안 제4조~제6조)
- · 추진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시행, 자치분권운동 군민참여 확대
-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및 운영(안 제7조~제11조)
- · 정책개발 및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권장·지원하기 위함
- 추진계획 및 분권촉진사항 심의, 15인 이내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임기 2년(1회 연임)
- 자치분권협의회 활동 및 지방분권 촉진사업 지원(안 제12조)
- · 「장성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및「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준용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9. 1. 30.)

5. 장성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안

■ 제출일자 : 2019. 1. 15.

■ 제 출 자 : 장성군수(총무과장)

■ 제안이유

- 매년 개정되는 노동관계법령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를 통해 업무추 진 미비점 보완 및 합리적 개선방향 제시
- 건전하고 안정적인 노사 관리 및 단체교섭 대비 협상력 향상과 향후 노동분쟁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
-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해석 및 사전 노사분규 해결을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상생 협력하여 공 동발전하고 근로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장성군 고문 공인노무사가 자문에 응할 수 있는 범위 규정(안 제2조)
- · 장성군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련 민원사항
- · [근로기준법] 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사항
- · 노동 관련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 ·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 · 군의 노동관계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
-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고문 공인노무사의 위촉·해촉 사유 규정(안 제3조)
- 고문 공인노무사의 자문절차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고문 공인노무사 임기 2년, 연임 가능 규정(안 제5조)
- 고문노무사에게 매월 20만원 이하의 수당 지급(안 제6조)
- 군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사건의 상대방에게 비밀누설 금지 의무 규정(안 제7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9. 1. 30.)

6.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9. 1. 15.

■ 제 출 자 : 장성군수(주민복지과장)

■ 제안이유

- 폐지된 호주제 관련 용어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 체계의 적합성 제고 및 성차별적 용어 순화
- 장사시설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처리기간 명시, 처리방법으로 준용된 상위법 조항 변경(장사시설의 운영 효율성 제고)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 중도포기 시 사용료 환불규정을 마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 목적조항에서 사용된 약칭 삭제(안 제1조)
- ·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 (개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사용자의 범위 중 호주제 관련 용어 변경(안 제9조제2호)
- \cdot (현행) 본적 \rightarrow (개선) 등록기준지
- 사용기간 명시 및 준용되는 상위법률 변경(안 제12조제3항)
- · (현행) 사용기간 경과 후 유골의 처리기간이 불명확하고, 처리방법에 준용되는 법률이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에 관한 법률)로 준용 법률로 부적절
- · (개선) 사용기간 경과 후 유골의 처리기간을 1년으로 명시하고, 처리 방법에 준용된 법률을 제20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로 변경함
- 사용허가 중도 포기시 사용료 환불규정 신설(안 제16조제3항)
- ·(현행)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중도포기 시 납부한 사용료 미반환
- (개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중도포기 시 사용기간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을 수 있도록 규정 신설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9. 1. 30.)

7.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9. 1. 15.

■ 제 출 자 : 장성군수(주민복지과장)

■ 제안이유

-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주민이 기금을 필요할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자립과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기금 설립취지에 부합되도록 함.

■ 주요내용

- 연대보증인 외의 대체수단 추가(안 제14조제2항)
 (현행) 융자금 신청 시 연대보증인만 세워야 하는 것으로 제한
 (개선) 연대보증인 외에 신용보증서, 보증보험증서 등 대체수단 추가 확대
- 융자금 미상환자에 대한 조치 보완(안 제18조제1항 ~ 제2항. 제21조제1항) (현행)
 - · 체납자가 발생할 경우 체납자에 대한 구체적 조치가 없으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처리

(개선)

- 보증인과 보증기관에 보증채무 이행 청구가능토록 함
- · 일반적인 채권환수 방법을 규정한 「지방재정법」에 따라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9. 1. 30.)

8.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제출일자 : 2019. 1. 15.

■ 제 출 자 : 장성군수(주민복지과장)

■ 제안이유

-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제34조에 따라 의무설치 되는 '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 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함

■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명칭 및 위치(안 제1조~제3조)
- 업무 및 기능, 이용대상, 이용료(안 제4조~제6조)
 - · 사례관리,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사업, 지역조직화 사업 등
 - · 실버주택 거주자를 우선으로 하되, 지역주민 대상
- 위탁운영,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사항(안 제7조~제9조)
 - · 위탁운영자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5년 이내)
- 지도·감독, 손해배상, 자체 운영 규정 등(안 제10조 ~ 제12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9. 1. 30.)

9. 장성군 문화 · 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출일자 : 2019. 1. 15.

■ 제 출 자 : 장성군수(문화관광과장)

■ 제안이유

- 지난 2015. 1월 ~ 8월까지 임권택시네마테크 관람료 징수결과 관람 객 감소로 관람료 수입이 적어 2015년 11월 관람료 징수를 3년간 유예(2016. 1. 1. ~ 2018. 12. 31.)조치 하였으나.
- 최근 관람객 추이(감소) 및 실효성 등을 감안하여 관람료 징수유예 기간을 3년 연장하고 관람객 증대 방안 활성화 후 유료화 추진

■ 주요내용

- 관람료 징수 유예기간 연장(부칙 제2조)
 - · (현행) 2019년 1월 1일
 - · (개선) 2022년 1월 1일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9. 1. 30.)

10. 장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출일자 : 2019. 1. 15.

■ 제 출 자 : 장성군수(보건소장)

■ 제안이유

-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

- 목적 및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지원종류 및 횟수,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4조)
-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환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준용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9. 1. 30.)

1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 제출일자 : 2019. 1. 15.

■ 제 출 자 : 장성군수(재무과장)

■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장성군 의회 청사 신축

- 1991년 장성군 의회 출범이후 현재까지 27년동안 군청사를 사용 중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법적기준 면적도 부족하므로 의회 청사를 신축하여 의회의 독립성과 상징성 확보하고자 함.
- 나.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 1976년 건축되어 노후된 북이면 청사를 이전 신축하여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주민 소통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함
- □ 공유재산 관리계획(제1차 변경)

가. 장성군 의회 청사 신축

(단위: m², 천원)

구 분		필지수/동수 면적		추정가격	비고
계		15필지 / 1동	2,102/2,762	8,000,000	
취득	토지매입	15 필지	2,102	800,000	
	건물신축	1 동	2,762	7,200,000	
	기타				

나. 북이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단위: m², 천원)

구	분	필지수/동수	면적	추정가격	비고
계		3필지 / 1동	1,887/998	2,870,000	
취득	토지매입	3 필지	1,887	270,000	
	건물신축	1 동	998	2,600,000	
	기타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9. 1. 30.)

12. 장성군 편백목공예 공방운영 관리 조례안

■ 제출일자 : 2019. 1. 15.

■ 제 출 자 : 장성군수(일자리경제과장)

■ 제안이유

- 장성군 편백목공예 공방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특산품 및 지역생산제품의 공동생산·전시·판매·체험 등을 통한 취약계 층 일자리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 공방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게 사용수 익허가 및 관리위탁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명칭 및 위치, 시설용도(안 제1조~제3조)
- 장성군 편백목공예 공방 운영 관리, 허가 및 위탁(안 제4조~제6조)
- 허가취소 및 위·수탁협약해지, 시설사용료(안 제7조~제8조)
- 시설관리의무, 지도감독, 보험가입 등(안 제9조~제13조)
- **의결결과** : **수정가결**(제2차 본회의 / 2019. 1. 30.)
- 수정내용

본 조례안 제8조 시설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징수한다는 사항으로, 제①항 「사용료는 장성군 공유 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우선 적용한다.」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삭제하였음

13.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제출일자 : 2019. 1. 15.

■ 제 **출 자** : 장성군수(농촌지원과장)

■ 제안이유

- 『장성군 임대농기계 운반서비스』업무가 추가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문 개정

- 임대기준 입·출고 시간 변경(안 제8조의4)
 - (현행)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 (개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 임대농기계 운반대행(택배)사업 실시(안 제9조의2)
 - · 관내 거주자 중 고령농업인 및 차량 미소유자인 임차인에 임대 농 기계 운반대행(택배)서비스 실시
- 의결결과 : 원안가결(제2차 본회의 / 2019. 1. 30.)